

1. 개정이유

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, 재심청구권자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·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심청구권자의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·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규정 신설
- 나.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,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7. 13. ~ 8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령안

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·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.

1. 「형사소송법」 제424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
2.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재심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변호사·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·법무조합

부 칙

이 규칙은 2026. 9. 1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수수료의 면제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9조(수수료의 면제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다음 각 호의 자가 재심 청 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 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1사건에서 정당 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 ·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 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.</u> 1. 「형사소송법」 제424조 및 <u>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형사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는 사람</u> 2.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<u>재심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변호사·법무법인·법무 법인(유한)·법무조합</u>